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이호진 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3674호

다. 제출일자 : 2026. 5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6. 5. 27.

2. 제안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, 시립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신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신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,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신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(안 제 7조제1항제7호의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6. 5. 30. ~ 2026. 6. 3.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가결

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확산이라는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임산부 주차요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

1) 주차계획과-23905('26.6.2.) “제336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”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%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,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사회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화²⁾됨에 따라 다자녀 가정, 임산부 등 영유아 양육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사회적 우대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고, 서울시에서도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³⁾ 및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⁴⁾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지원, 산후조리 경비지원,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등의 사업⁵⁾을 수행하고 있음

2) 저출생의 그늘...어린이집 재원아동 수 80만명 무너져 뉴시스 (2026.4.24.)

3)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4)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·시행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5)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서울 정책 아카이브)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임신부 앱카드⁶⁾ 등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공영주차장⁷⁾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 시설이라는 점에서 임신부 주차요금 감면 혜택 신설은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

사업명	지원 대상	사업 내용
대중교통 이용지원	임신 3개월~출산 후 3개월 임신부	교통비 지원 및 공공기관·대중교통 인프라 내 배려공간 조성
산후조리 경비지원	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서, 서울시 출생 등록,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	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
위기임산부 통합지원	임신으로 고민·갈등이 있는 누구나	24시간 비밀 상담, 시설·기관 연계,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
- 6) 임신부 앱카드 개요(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-여성가족실)
- 정의: 산모수첩, 임신확인증, 임신부 배지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임신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
 - 대상: 임신 중 혹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임신부

7)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정의

「주차장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
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○ 이와 관련하여 부산·인천시 등 타 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동대문·강동구 등에서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부 탑승 차량에 대해 50~100%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⁸⁾을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서울수도 임신부 감면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

○ 다만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 등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‘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 등 용역⁹⁾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

8) 주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 자치구 임신부 대상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현황

구 분	지 자 체 명	감 면 내 용
광 역 지방자치단체	인천광역시	100 퍼센트 면제
	부산광역시	50 퍼센트 경감
	울산광역시	
	세종특별자치시	
서울특별시 자 치 구	강동구	50 퍼센트 경감
	도봉구	
	양천구	
	동대문구	

9)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 개선 등 용역(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-1477호)(2026.5.19.)

- 기간: 계약체결일~2026.12.31.
- 사업비: 120백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
- 과업의 목적
 -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한 사항은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이고 12개 유형의 주차요금을 감면 중이나, 다양한 이해집단에서 주차요금 감면 요청 중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함
 -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체계 개선 계획 수립('16년)' 이후 주차장 생태환경의 변화 등으로 위탁대상 선정 시에 현재와는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 일부 존재함
- 과업 공간범위: 서울시 공영주차장(건립 중인 주차장 포함)
- 과업 시간범위: '24.1.~'26.3.
- 과업의 내용
 -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분석·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
 - 공영주차장의 직영 및 민간위탁 대상 선정기준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

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감면 항목 간의 우선순위, 감면 비율의 형평성 및 감면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여 임산부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